



제426회 국회(임시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에 교육공무원 배치 의무화〉
■ 이해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8756호)

2025. 7.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 문 위 원 나 아 정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이해식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5. 03. 10.
3. 회 부 일 : 2025. 03. 1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한 초등학생이 가장 안전한 공간이어야 할 학교에서, 가장 믿고 따라야 할 교사에게 소중한 생명을 빼앗긴 이른바 ‘하늘이 사건’이 발생했음. 이 비극적인 사건은 학생 보호체계에 중대한 허점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임.

현행법은 시·도지사 소속으로 자치경찰위원회를 두어 자치경찰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자치경찰은 청소년 보호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상해, 폭행, 따돌림 등의 학교폭력 예방 사무를 하고 있음.

이에 시·도지사는 시·도교육감으로부터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1명을 추천받아 임명하고 있으나, 정작 실질적 사무를 처리하는 사무기구에는 교육공무원을 배치할 법적 근거가 없어 교육현장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고려한 업무 수행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기구에 지방교육공무원을 두도록 하여 보다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안 제27조제3항).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에 시·도교육감 소속의 교육전문직원¹⁾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7조(사무기구) ①·② (생략) <u><신설></u> ③·④ (생략)	제27조(사무기구)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사무기구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교육전문직원을 두어야 한다. ④·⑤ (현행 제3항 및 제4항과 같음)

현행법은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사무기구에는 경찰공무원을 두도록 하고 있으며, 사무기구의 조직·정원·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 대통령령²⁾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도조례로 정하

1) 「지방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지방자치단체가 경비를 부담하는 지방공무원을 말하며, 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한다.

② “경력직공무원”이란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 동안(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을 말한다)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직공무원: 기술·연구 또는 행정 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특정직공무원: 공립 대학 및 전문대학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 교육감 소속의 교육전문직원 및 자치경찰공무원과 그 밖에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에서 특정직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3. 삭제

③ ~ ④ (생략)

2) 「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8조(사무기구)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사무기구의 조직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② 사무기구의 장은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사무기구에 두는 경찰공무원의 시·도별 정원과 계급별 정원은 「시

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지역 내 학교폭력 예방 등의 사무를 관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³⁾,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위원 구성 시 해당 시·도 교육감이 추천하는 1인을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⁴⁾.

·도자치경찰위원회에 두는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에 따르며, 사무기구에 두는 경찰공무원은 경찰청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해야 한다.

3)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경찰의 사무) ① 경찰의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국가경찰사무: 제3조에서 정한 경찰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사무. 다만, 제2호의 자치경찰사무는 제외한다.

2. 자치경찰사무: 제3조에서 정한 경찰의 임무 범위에서 관할 지역의 생활안전·교통·경비·수사 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무

가. 지역 내 주민의 생활안전 활동에 관한 사무

1) 생활안전을 위한 순찰 및 시설의 운영

2) 주민참여 방법활동의 지원 및 지도

3) 안전사고 및 재해·재난 시 긴급구조지원

4) 아동·청소년·노인·여성·장애인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보호 업무 및 가정폭력·학교폭력·성폭력 등의 예방

5)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사회질서의 유지 및 그 위반행위의 지도·단속. 다만, 지방자치단체 등 다른 행정청의 사무는 제외한다.

6) 그 밖에 지역주민의 생활안전에 관한 사무

나. 지역 내 교통활동에 관한 사무

1)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지도·단속

2) 교통안전시설 및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심의·설치·관리

3) 교통안전에 대한 교육 및 홍보

4) 주민참여 지역 교통활동의 지원 및 지도

5) 통행 허가, 어린이 통학버스의 신고, 긴급자동차의 지정 신청 등 각종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무

6) 그 밖에 지역 내의 교통안전 및 소통에 관한 사무

다.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 교통 및 안전 관리

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사사무

1) 학교폭력 등 소년범죄

2) 가정폭력, 아동학대 범죄

3) 교통사고 및 교통 관련 범죄

4) 「형법」 제245조에 따른 공연음란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에 따른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에 관한 범죄

5) 경범죄 및 기초질서 관련 범죄

6) 가출인 및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실종아동등 관련 수색 및 범죄

② ~ ③ (생략)

4)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의 임명 및 결격사유) ①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시·도지사가 임명한다.

1. 시·도의회가 추천하는 2명

2. 국가경찰위원회가 추천하는 1명

이처럼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지역 내 청소년에 대한 보호 업무 및 학교폭력 예방 등의 사무를 관장함에 따라 현재 7개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서는 시·도교육청 소속 교육공무원을 파견받아 인력을 운용하고 있음.

<시·도자치경찰위원회 교육공무원 근무 현황>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세종	충북	충남	전남
12명	1명 교육행정 6급	2명 교육행정 7급	1명 교육 전문직원 장학사	2명 교육행정 6급	3명 교육행정 6급	1명 교육행정 6급	1명 교육행정 6급	1명 교육행정 6급

※ 자료 : 경찰청

그런데, 현행 법령상 사무기구의 지방공무원 정원은 모두 시·도 소속 공무원으로 책정되어 있어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 교육공무원을 배치하기 위해서는 시·도지사 및 시·도 교육감 간에 파견과 관련한 협의가 필요한 상황임.

이에 개정안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사무기구에 시·도 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원의 배치를 의무화하려는 것으로, 청소년 보호·학교폭력 예방 등의 자치경찰사무의 전문성 강화에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봄.

참고로 경찰청은 자치경찰사무의 전문성 강화와 유관기관 협업 등의 차원에서 개정안의 입법 취지에 찬성한다는 입장임.

-
3. 해당 시·도 교육감이 추천하는 1명
 4.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하는 2명
 5. 시·도지사가 지명하는 1명
 - ② ~ ⑧ (생략)

타 기관 의견을 살펴보면, 서울자치경찰위원회는 교육전문직원 배치의 필요성에 수용 입장을 보인 반면, 경기남부자치경찰위원회는 일반직공무원(교육행정직)까지 배치 대상 확대를,

울산·전북·경북교육청은 교육전문직원 인력 부족을 이유로 상호 협력체계 강화 방안으로 대체할 것을 주장하는 등 기관별로 인력 현황과 지역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입장을 보이고 있음.

문 의 처
02)6788-5344